

‘예외상태’의 일상화와 통치술로서의 ‘국방위원장 체제’: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을 중심으로

김 종 옥*

- I. 서론: ‘김정일 시대’ 국가성격의 변화
- II. ‘고난의 행군’의 충격과 ‘예외상태’의 일상화
- III. 국가의 ‘돌봄’ 포기과 ‘벌거벗은 생명(homo sacer)’의 탄생
- IV. ‘통치술’로서 ‘국방위원장 체제’: 위기관리체제의 ‘일상화’
- V. 결론: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

국문요약

이 글은 ‘김정일 시대’ 북한 국가의 특징을 ‘예외상태’의 일상화와 북한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치술로서 ‘국방위원장 체제’가 등장했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처한 3대 위기는 ‘수령’의 사망, 증여 시스템의 붕괴, 통치 인프라의 고갈로 인한 수령 권위·국가 권위·관료체제 등에서의 균열 발생이었다. 이 위기에서 국가는 인민에 대한 ‘돌봄’을 포기했으며, 식량난에 처한 북한주민의 삶을 방치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예외상태’로 선포할 수 있는 자는 주권자이며, 북한의 주권자는 바로 김정일이었다. 김정일은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이후 발생한 식량난으로 인한 긴급 사태를 ‘고난의 행군’이라는 ‘예외상태’로 선포하고, 전권을 행

사하며 위기극복에 착수했다. 위기극복을 위한 시스템으로써 활용된 통치술이 ‘국방위원장 체제’였다. 국방위원회는 ‘예외상태’ 속에서 통치를 실행하는 즉 내치와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 통치술이 작동하는 기간 동안 북한의 인민은 ‘벌거벗은 생명’인 ‘호모 사케르(homo sacer)’로 재탄생했고, ‘예외상태’는 일상화되었다. 일시적 긴급사태 극복을 위한 조치가 일상적 통치술로 전환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김정일 시대’ 국가운영의 원리가 되었다.

주제어: 예외상태, 국방위원장, 통치술, 호모 사케르, 국가성격

I. 서론: ‘김정일 시대’ 국가성격의 변화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일 시대’에 북한은 ‘예외상태’가 일상화되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통치술로서 ‘국방위원장 체제’가 등장했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

*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

며, 이를 통해 북한 국가성격의 변화를 추적하려는 것이다. 단, 국가제도 또는 국가성격이 통치의 일방적 방식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사람과 사물의 네트워크를 통한 쌍방의 구성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 이 글의 초점이 북한의 김정일이 ‘예외상태’에서 어떤 통치술을 작동했는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과 관료들이 통치의 방식에 맞서 어떤 방식으로 ‘저항·전유·동의·침묵’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북한의 국가와 사회는 ‘고난의 행군’ 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는 연속이면서 동시에 불연속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체제의 속성은 유지되지만, 동시에 단절되었다. “이는 결국 하나의 규범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것의 적용을 정지시켜 하나의 예외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¹ 따라서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사회가 규범의 정지를 통해 새로운 예외를 창출하고, 선언된 예외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조정기간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북한적’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그 시스템의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을 모색했으며, 이 기간 동안 북한의 국가성격이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고난의 행군’ 시기는 북한사회에서 ‘예외상태’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새로운 성격의 국가가 구성되었다.

그렇다면 ‘김정일 시대’의 북한의 국가성격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김정일 시대’의 국가성격에 대한 규정을 둘러싸고 전통적인 전체주의 및 ‘수령제’ 국가로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극장국가’, ‘정규군 국가’, ‘신사회주의적 조합주의’, ‘정치적 렌트수취국가(political rentier-state)’, ‘미시 파시즘’ 등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²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은 북한 국가성격에 대한 구조적 논의보다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분석과 긴급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통치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그 이유는 긴급사태를 극복하는 과정과 위기극복의 통치술 작동을 분석하는 것이 북한 국가성격 논의의 ‘남은 틈새’를 채우는 것에

¹ 조르조 아감벤 지음·김향 옮김,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09), p. 82.

² 오일환, “김정일 시대의 북한체제의 현황,” 오일환 외, 『현대북한체제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0);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서울: 창비, 2003); 와다 하루키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Bruce Cumings,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Koo Ha-gen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New York: the Cornell University, 1993); 윤철기,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시대 ‘정치적 렌트수취국가’로의 이행과 ‘과도기 사회’적 특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1호 (2013); 강진웅, “북한의 국가권력에 대한 미시적 접근: 호전적 민족주의와 주민들의 삶,” 『한국사회학』, 제44집 2호 (2010).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글은 1994년 김일성주석의 사망, 1995년 ‘붉은기사상’을 시작으로 1996년 신년공동사설의 ‘고난행군정신’과 동년 10월 4일 ‘고난의 행군’ 돌파에 대한 제기, 1998년 5월 26일 ‘선군정치’의 제기, 동년 8월 22일 ‘강성대국’ 제기, 2001년 10월 10일 ‘고난의 행군’ 승리 선언까지의 시점에서 벌어진 북한의 국가성격 변화를 추적한다.

이러한 전제 하에 II장에서는 ‘고난의 행군’과 그 이후를 ‘예외상태’의 일상화로 규정하여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처한 3대 균열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재편 필요성에 대해 서술하고, III장에서는 국가가 인민에 대한 ‘돌봄’을 포기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이 어떻게 ‘벌거벗은 생명’으로 탄생했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IV장에서는 북한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택된 ‘국방위원장 체제’의 통치술에 대해 분석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을 시론적 차원에서 정리할 것이다.

II. ‘고난의 행군’의 충격과 ‘예외상태’의 일상화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국가의 효과적인 통치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상황에 직면했고,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위기극복을 위한 국가 재편에 착수했다. 통치능력의 상실은 ‘실패국가’로의 이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것은 통치에 있어 사활적인 문제이다.³ 즉 ‘고난의 행군’을 ‘예외상태’로 규정하고, 인민에 대한 국가의 ‘돌봄’을 포기하여 주권자인 최고지도자의 통치권 속에 인민을 결박한 시기로 규정할 수 있다.

³ 실패한 국가란, 중앙정부가 국가 영토 범위를 둘러싼 효과적 통제를 상실하여 기본적 공공재의 전달이 중단된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Jennifer Milliken and Keith Krause, “State Failure, State Collapse, and State Reconstruction: Concepts, Lessons, and Strategies,” *Development and Change*, Vol. 33, No. 5 (2002), pp. 753~754. 그러나 잠정적으로 국가가 통치능력(capacities of governance)의 대부분을 상실하여 유사국가(quasi-state)가 되었을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Joseph MacKay, “State Failure, Actor- Network Theory, and the Theorisation of Sovereignty,” *BSI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 (2006), p. 66. 따라서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 규정할 수는 없으나, 통치능력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관료와 주민이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통치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국가에 있어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1. ‘고난의 행군’의 충격과 국가 재편의 필요성

북한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우리 당이 50년 동안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 왔지만 최근 시기와 같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 때는 없었다”라고 설명했다.⁴ 그만큼 이례적인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즉 ‘고난의 행군’은 북한사회에서 일대 충격이었으며, 이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재편은 필수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통치자와 국가의 입장에서 어떤 위기로 등장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은 3대 균열의 위기에 처했으며,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국가의 최대 과제였다. 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일성의 사망으로 인한 ‘수령’ 권위의 공백이다. 북한은 ‘수령’을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통일 단결시키는 유일한 중심이며 혁명과 건설의 향도적 역량인 당과 정권기관, 근로단체들을 유일적으로 지도하는 최고뇌수”로 정의한다.⁵ 따라서 ‘수령’의 사망은 북한사회 작동의 상징과 중심의 붕괴를 의미한다. “김정일의 통치시대는…엄청난 두 가지 죽음을 수반한 국가적 위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하나는 대체 불가능한 창시자 아버지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그 지도자의 정치적 자식들의 대규모 기아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죽음이다.”⁶ 즉 ‘김정일 시대’는 ‘수령’ 권위의 공백과 동시에 ‘뇌수’를 잃어버린 수많은 ‘인민’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김정일 체제’는 ‘주체 사회주의’ 상징인 ‘수령’의 퇴장과 주권의 원천인 ‘인민’의 죽음이 뒤섞인 ‘예외상태’ 속에서 출범한 것이다.

둘째, 계획경제의 근원적 모순 축적, 식량문제와 결합된 심각한 자연재해, 그리고 대외안보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증여시스템의 붕괴에 의한 국가 권위의 균열이다. 계획경제의 작동불가능성은 관료적 통제의 불능상태를 의미한다.⁷ 사회주의 경제에서 동기부여(motivations)는 정치·도덕적 신념, 직업과의 일체감, 권력, 위신, 물질적 혜택, 평온한 삶, 처벌에 대한 공포 등을 들 수 있다.⁸

⁴ 동태관,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백두의 령장 김정일장군의 <고난의 행군> 혁명실록을 펼치며,” 『로동신문』, 2000년 10월 3일;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2005), p. 15에서 재인용.

⁵ 『로동신문』, 1969년 4월 29일.

⁶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p. 230.

⁷ “계획 분배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다. 더 높은 곳으로부터 낮은 수준으로의 계획은 권고가 아니라 지령(command)이다. 하위 기관은 계획지령을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이 지령의 마비는 국가에 의한 관료적 통제의 불능을 의미한다. Já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113.

이런 경제시스템의 핵심은 관료적 통제 하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상급자와 하급자의 수직적 계선을 통한 계획 및 정치적 지령과 이 지령 수행의 불가능성을 우회하기 위한 수평적 계선의 공모와 담합이 서로 얽혀 있다. 동시에 수직적 계선에서도 다양한 흥정과 계약이 공존한다. 이러한 복잡한 연출망의 핵심은 관료적 통제이다. 이 관료적 통제가 망실(亡失)되었다는 것은 국가 권위의 상실을 의미한다.

셋째, 경제 상황에 의한 관료체제의 급격한 이완과 통치자금의 고갈로 관료체제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북한 경제성장률 추이를 보면, 1990년대 이후 일정한 부침은 있지만 지속적인 경제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북한은 1989년을 기점으로 1인당 명목 GDP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 통계를 제외하면 1980년대 후반 수준을 회복한 통계지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⁹ 이런 상황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부터 군부의 외화벌이가 현저하게 증가했다.¹⁰ 이는 일상적으로 진행되었던 국가와 관료 간의 충성과 수혜의 교환구조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국가경제의 추락에 의한 관료체제의 이완과 통치자금의 고갈 현상은 ‘어쩔 수 없이 승인된’ 외화벌이의 확산으로 귀결되었으며, 기존의 통치를 뒷받침 했던 충성과 수혜의 교환구조는 자원고갈과 증여시스템의 붕괴로 인해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¹

<표 1>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연도	'90	'95	'96	'97	'98	'99	'00	'01	'02	'03	'09	'10	'11	'12
성장률	-4.3	-4.4	-3.6	-6.3	-1.1	6.2	0.4	3.8	1.2	1.8	-0.9	-0.5	0.8	1.3

출처: 한국은행, “2012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결과,” 보도자료 (2013년 7월 12일), p. 1; 한국은행 『북한 GDP 추정결과』 참조.

이러한 ‘3대 균열’은 최고통치자와 국가의 입장에서 심각한 통치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거대한 구조였다. 북한식 사회주의시스템의 상징인 ‘수령’ 권위의 균열, 사

⁸ *Ibid.*, pp. 118~119.

⁹ 김천구, “2012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현안과 과제』, 제13권 29호 (2013), 현대경제연구원, p. 8.

¹⁰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p. 224.

¹¹ “준다 것은 자기의 우월성, 즉 자기가 더 위대하고 더 높으며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답례하지 않거나 더 많이 답례하지 않으면서 받는다는 것은 종속되는 것이고, 손님 또는 하인이 되는 것이며, 작아지는 것이고 더 낮은 지위로 떨어지는 것이다.” 마르셀 모스 지음, 이상률 옮김, 『증여론』 (서울: 한길사, 2002), p. 268.

회주의식 증여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국가 권위의 균열, 기존 통치의 위계구조를 지탱했던 충성과 수혜 구조의 붕괴로 인한 관료체제의 균열은 총체적인 북한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균열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편에 착수해야 한다. 국가재편의 근거는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난의 행군’이라는 ‘예외상태’로 규정하고, 최고지도자에게 전권을 부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2. ‘예외상태’의 일상화로서 ‘김정일 시대’

칼 슈미츠(Carl Schmitt)는 주권자를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자’라고 정의했으며, 아감벤(Giorgio Agamben)에게 ‘예외상태’는 법률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법률적 조치이며 어떤 법률적 형식도 가질 수 없는 것의 법률적 형식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의미한다. 또한 살아 있는 자를 법에 묶는 동시에 법으로부터 내버리는 상황으로 규정한다.¹²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주민들은 위기극복을 통한 체제 유지라는 김정일의 지침에 따라, 법에 묶여 국가에 의한 동원과 현실의 재난을 인내하는 한편 국가의 ‘돌봄’ 포기에 의해 죽음에 방치되는 이중적 상황에 내몰렸다. 이 ‘예외상태’에서 북한의 주민은 법으로부터 묶인 동시에 법으로부터 방치되어버린 생명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예외상태는 어떤 경우에도 무정부상태나 혼란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의미에서는 법질서가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언제나 하나의 질서가 존재한다.”¹³ ‘예외상태’는 무정부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범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¹⁴ 또한 “주권자는 통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법질서 바깥에 있으면서도 그러한 질서에 속해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고난의 행군’의 모든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 바깥에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 정체(政體)의 방향을 결정할 위치에 있다. 즉 그는 “헌법의 효력이 완전히 정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¹⁵ 주권자인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법률의 안과 바깥에 모두 존재하며, 이 ‘예외상태’를 결정할

¹²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pp. 13~14.

¹³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München (1922), p. 18;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p. 69에서 재인용.

¹⁴ 칼 슈미츠에게 ‘예외상태’는 정상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일시적 상태를 의미했다면, 아감벤에게 ‘예외상태’는 정상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일시적 상태가 아니라, 근대 생체권력이 사람들을 헐벗은 삶으로 몰아가는 지속적인 상태로 인식했다. 표광민, “주권해체를 향한 아감벤의 예외상태론,” 『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1), p. 15.

¹⁵ Carl Schmitt, *Politische Theologie*, p. 13;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pp. 71~72에서 재인용.

도로 변경되었다. 단, ‘주석’의 권한은 ‘국방위원장’에게 그대로 이전되었다. 김정일은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모시고, 통치 주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비정상적 방식으로 통치를 수행한 것이다. 당-국가시스템을 군 중심의 국가운영시스템으로 전환시켰으며, 국가의 증여시스템을 방치하고 북한주민들에게 ‘강제적 자립화’를 강요했다. 따라서 기존 법률과 제도는 작동하지 않고, 통치 주권자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공백 속에서 ‘고난의 행군’ 기간 동안 새로운 국가시스템이 정비된 것이다. 이러한 법률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에 의해 그것이 법률적 조치가 되는 상황이 바로 ‘예외상태’이며, 이 ‘예외상태’를 결정하는 주권자가 바로 북한의 ‘국방위원장’이었던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수령’ 사망과 경제위기가 겹치는 일종의 권력 공백이 발생했다. 뒤이어 자연재해에 따른 식량난으로 인해 심각한 아사가 발생했고, 공장의 가동률은 20~30% 수준으로 추락했다. 이는 긴급 상황의 발생을 의미한다. 기존의 방식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¹⁹ 북한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으로 규정하고 ‘사회주의 강행군’을 통해 극복할 것을 제시했다. 북한의 권력이나 주민의 입장에서 이 시기는 겪어보지 못한 경험이었으며, 겪어보지 않은 현실 극복을 위해 새로운 규범을 창출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의 객관적 조건과 무관하게 그 상황을 규정하고 상황 극복의 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주권자, 즉 북한의 ‘최고 지도자’이다.

1992년 개정 헌법에 의하면, 국방위원회가 유사시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으며(제114조 4항), 이에 따른 명령을 낼 수 있다(제115조). 따라서 법적으로 이 긴급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국방위원장, 즉 김정일이다.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총비서, 주석, 최고사령관, 국방위원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명의로 사태를 규정하고 사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다. 단 김정일이 ‘수령’ 유고시, ‘수령’을 대행할 ‘후계자’란 점에서 국방위원장이란 직위와 무관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판단은 김정일에 의해 결정된다.

“긴급사태란 객관적으로 주어지기는커녕 명백하게 주관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긴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이란 어디까지나 긴급하고 예외적이라고 선언되는 상황일 뿐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⁰ 객관적 상

¹⁹ 긴급사태는 법률의 궁극적인 기초와 원천 자체를 구성한다는 원리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긴급사태야말로 법 전체의 최상위이자 근원적인 원천이며, 새로운 규범의 생산으로 구체화된다. 위의 글, pp. 57~59.

황이 어떻든 간에, 그 상황의 규정은 최고지도자의 주관적 판단에 근거하며, 그 판단에 의해 새로운 규범이 창출된다.²¹ 북한시스템의 거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의 존립과 기존의 규범 적용의 당위성을 보장하기 위해 ‘픽션적 공백’으로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예외상태’가 선포되고,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의해 사태 수습의 전권이 보장된다.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일종의 준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국가, 한 민족이 완전히 괴멸해버릴 수 있는 이런 최악의 형편에서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었던 조국수호전은 얼마나 준엄했는가. 그것은 말 그대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 총포성이 울리지 않는 세계적인 대전이었다.”²² 북한의 규정대로라면, ‘고난의 행군’ 시기는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며, 가상의 적을 규정하여 준전시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래서 북한주민들은 이 시기에 ‘적들과 총포성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어야 했으며,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는 군인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²³ 이러한 결정을 수용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주민들이 느끼는 공포 때문이었다. 즉 공포가 ‘예외상태’를 선포한 북한 최고지도자의 결정을 수용하게 만든 것이다. 이 시기에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으며, 이러한 ‘예외상태’는 공포의 일상화를 의미한다.²⁴ 즉 ‘고난의 행군’은 공포가 일상화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²⁵

공포와 함께 도래한 ‘고난의 행군’은 ‘예외상태’의 일상화를 의미하며, ‘벌거벗은 생명’인 인민이 탄생한 계기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빨치산의 삶을 1990년대에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삶을 강요한 것과 다르지 않다. ‘재현이 현실을 능가하게 되는’ 삶을 강요받은 것이다.²⁶ ‘예외상태’ 속의 북한주민은 생존

²⁰ 위의 글, p. 62.

²¹ “예외상태는 규범의 공백에 대응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규범의 존립과 정상 상황에 대한 규범의 적용을 보증하기 위해 질서 안에 하나의 픽션적 공백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위의 글, p. 65.

²² 동태관, 『로동신문』, 2000년 10월 3일;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p. 12에서 재인용.

²³ 김갑식, 위의 글, p. 17.

²⁴ “공포가 가장 무서울 때는 그것이 불분명할 때, 위치가 불확정할 때, 형태가 불확실할 때, 포착이 불가능할 때, 이리저리 유동하며, 종적도 원인도 불가해할 때다…‘공포’란 곧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위협의 정체를 모른다는 것, 그래서 그것에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에 달려들어 맞서 싸우려 해도, 싸워볼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함규진 옮김, 『유동하는 공포』 (서울: 산책자, 2009), p. 11.

²⁵ “일상생활의 90퍼센트 이상을 지배했던 습관과 행동방식이 삼시간에 의미를 잃었고…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위의 책, pp. 28~30.

²⁶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예코

을 위해 국가가 부과하는 이데올로기와 구호를 재현해야만 하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 재현은 언제나 현실의 공포와 기아를 벗어날 수 없었다.

Ⅲ. 국가의 ‘돌봄’ 포기과 ‘벌거벗은 생명(homo sacer)’의 탄생

“원자화된 개인들의 고립이 전체주의 지배의 대중적 토대를 제공한다”는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의처럼,²⁷ ‘고난의 행군’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지속적인 생존의 불안과 생계유지를 위한 일상의 변동 속에서 고립되었다. 일탈의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감시와 통제, 지속적인 ‘비사그루뵀’에 의한 검열과 적발, 적발된 자들에 대한 모진 고문과 공개적인 처형, 주민들의 생존을 위한 고발과 신고 등은 북한사회를 상호의심의 사회 속으로 더욱 결박시켰다.

1. 국가의 돌봄 포기과 일상의 ‘벌거벗은 생명’

북한사회의 주민들은 고립되고 무기력한 존재이며, 동시에 권력이 부과한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잉여’가 되어버리는 존재였다.²⁸ 특히 ‘고난의 행군’ 기간을 거치면서 이러한 흐름은 더욱 강화되었다. 국가 능력의 부재로 인해 증여시스템이 마비되었고, 국가는 주민에 대한 돌봄 포기과 대응했다. 국가의 돌봄 포기과 체제유지를 위한 감시와 통제의 강화는 주민들의 ‘잉여’적 존재로의 전락을 심화시켰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북한주민들은 ‘벌거벗은 생명’ 즉 ‘호모 사케르(homo sacer)’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호모 사케르’는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지만 죽어도 되는 생명을 의미한다. 즉 절대적인 살해 가능성에 노출된 생명, 법과 희생 제의의 영역 모두를 초월하는 어떤 폭력의 대상을 가리킨다. 이들은 주권 권력의 특권 중 하나인 생사를 결정하는 권리에 의해 죽음에 노출된 생명이며, 주권자에 의해 무제한적인 살해 허가가 가능한 예외적 존재들이다.²⁹ 역설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리브르, 2010), p. 300.

²⁷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2』 (서울: 한길사, 2006), p. 172.

²⁸ “‘잉여’란 여분, 불필요함, 무용함을 의미하며…잉여로 규정된다는 것은 버려져도 무방하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잉여는 ‘불합격품’, ‘불량품’, ‘폐기물’, ‘찌꺼기’에 다름 아니다.”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정일준 옮김,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서울: 새물결, 2008), p. 32.

²⁹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2008), pp. 175~187.

대신 주권자가 시민들 모두의 보존을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의해 그 자신의 처벌권을 행사하도록 그(글쓴이: 주권자)를 강화”시켜주었다.³⁰ 북한 최고지도자의 ‘예외상태’ 선포에 의한 전권의 행사를 허용한 것은 북한주민들이었다.

따라서 ‘고난의 행군’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자는 언제나 죽여도 되는 존재이며, 기아에 의한 아사자를 방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고난의 행군’ 기간을 겪으면서 북한주민들은 육체적 삶을 유지하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북한의 공식담론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텅 비어 버리고, 북한주민들은 생존의 문제, 육체를 보존하는 삶만이 남게 되었다.³¹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국가가 인민에 대한 돌봄을 포기한 것이다. 국가는 인민을 실질적으로 방치했으며, 북한주민들의 생존의 몫은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지혜’에 달려 있었다. 이미 1994년 북한은 기관, 기업소 차원에서 식량문제를 자체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국가배급 체계로부터 ‘기관, 기업소 배급 체계’로의 전환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며, 국가의 몫을 인민에게 전가한 것이다.³²

이 상황은 주민과 관료들의 생존방식으로써 시장의 확대와 국가 자원의 시장 유출을 통해 부분적으로 해소되었지만, ‘김정일 시대’ 내내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했다. ‘고난의 행군’ 기간의 식량부족 상황은 극단적이었으며, 항상 식량의 절대적인 부족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표 2> 참조). 이는 북한주민들을 기아와 영양부족, 그리고 상시적인 죽음의 공포로 내몰았다.

<표 2> 북한의 식량 수급량 추이

(단위: 만 톤)

연도	식량 소요량		부족량 (1,630kcal 기준)	국제사회의 지원	수입량	절대 부족량	
	1,630kcal 기준	2,080kcal 기준				1,630kcal 기준	2,080kcal 기준
1995/1996	598	670	191	54	65	72	144
1996/1997	535	599	248	50	75	123	187

³⁰ 위의 책, p. 217.

³¹ 아감벤은 유대인 수용자들을 비오스(bios: 사회정치적 삶)가 사라지고 조에(zoē: 육체적 삶)로서의 삶만이 남은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의 행군’ 기간과 그 이후 북한주민들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라는 북한식 설명과는 무관하게 ‘사회정치적 생명’은 박탈당하고 유한한 ‘육체적 생명’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³²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p. 222.

연도	식량 소요량		부족량 (1,630kcal 기준)	국제사회의 지원	수입량	절대 부족량	
	1,630kcal 기준	2,080kcal 기준				1,630kcal 기준	2,080kcal 기준
1997/1998	461	516	177	90	80	7	62
1998/1999	483	541	105	79	25	1	58
1999/2000	476	533	134	100	17	17	57
2000/2001	478	535	221	123	20	78	135
2001/2002	495	554	130	150	10	30(초과)	29
2002/2003	492	551	95	117	10	32(초과)	27
2003/2004	510	571	102	94	10	2(초과)	59
2004/2005	513	574	89	84	10	5(초과)	56
2005/2006	518	580	64	109	-	45(초과)	17
2006/2007	521	583	73	30	26	17	79
2007/2008	523	586	122	72	23	27	90
2008/2009	526	589	95	37	15	43	106
2009/2010	512	573	178	29	20	129	190
2010/2011	535	599	86	9	31	46	110
2011/2012	539	604	73	4	37	32	97

출처: 문경연·김판석,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과 경제에의 함의,”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p. 126.

그리고 정확한 통계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고난의 행군’ 기간과 그 이후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인해 사망했다(<표 3> 참조). 사망인원의 추정은 적게는 25만 명에서 많게는 300만 명까지 통계의 편차는 크지만, 북한주민들이 죽음의 공포에 직면했고, 그 죽음의 고비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김정일 스스로 이 시기를 ‘무정부상태’로 표현했으며, ‘선군정치’의 핵심이 될 인민군대에도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비판할 정도였다.³³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상황은 더욱 열악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³⁴

³³ “월간조선 긴급입수자료: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 기념 김정일연설,” 『월간조선』, 1997년 4월호.

³⁴ 탈북자 인터뷰에서 한 탈북자는 1997년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많아요. 엄청 많아요. 많아서, 어휴, 우리 동네도 진짜 많이 죽었어요.” 협동농장원 출신 탈북자 인터뷰 (2009년 1월 20일 진행).

도 무방한 존재들이 거쳐하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수용소란 ‘예외상태’가 규칙이 되기 시작할 때 열리는 공간이며…누구든 수용소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은 내부와 외부, 예외와 규칙, 합법과 불법이 구별되지 않는 지역으로 들어서는 것이며, 거기서 개인의 권리나 법적 보호라는 개념들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는다.³⁷

즉, 북한에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규정을 어기는 존재는 언제나 수용소에 들어가거나, 공권력에 의해 처벌 받아도 무방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 ‘예외상태’의 공간은 비식별의 공간이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공간이 되어버리고, 기존의 관행적 삶으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들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오로지 별 거 벗은 생명 외에 지닌 것이 없는, 전적으로 권리를 박탈당한 자’들이다.³⁸

따라서 ‘예외상태’에서 최고지도자의 명령에 따르면 살게 만들고 그렇지 않다면 죽도록 내버려두는 사태에 직면한다. 통치 체계의 불완전한 작동과 심각한 기근의 시대에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주민이다. 따라서 ‘살게 하든가 죽게 내버려두는’ 권력이 작동하게 된다.³⁹ 이러한 판단을 위해 국가공권력이 작동한다.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등의 내치 공권력의 확대는 불가피하며, 모든 판단은 법률에 근거하기 보다는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판단과 공권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⁴⁰ 이제 ‘예외상태’에서 북한주민들은 단속의 대상으로서 ‘로동단련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수용소에 갇힐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공개처형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모든 판단의 근거는 법률로 가장된 최고지도자와 경찰력에 의해 좌우된다. 예를 들면 ‘심화조 사건’을 통해 경찰력이 대상 주민들을 고문·심문하고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숙청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⁴¹

이미 북한은 주민들을 ‘기본 균중-복잡한 균중-적대계급 잔여분자’의 세 가지

³⁷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pp. 319~322.

³⁸ 고지현, “조르조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읽기,” 『人文科學』, 제93집 (2011), p. 226.

³⁹ 미셸 푸코 지음, 이균현 옮김, 『성의 역사: 앎의 의지』 (서울: 나남출판, 1994), pp. 146~148.

⁴⁰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공간이, 실제로는 정상적인 법질서가 사실상 정지되어 있고, 잔혹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닌지 여부는 법이 아니라, 그 시점에 임시적으로 주권자로 행세하는 경찰의 예외바름과 윤리 감각에 전적으로 달려 있는 공간”이 된다. 조르조 아감벤, 『호모 사케르』, p. 329.

⁴¹ ‘심화조 사건’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인민보안부(당시 사회안전성)가 8,000여 명의 인원으로 이뤄진 ‘심화조’를 만들어 약 2만 5,000명의 북한주민을 숙청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컸는지 김정일이 ‘심화조’에 대한 소탕작업을 지시했다고 한다. 『신동아』, 통권 553호 (2005), pp. 120~136 참조.

로 구분하고, 주민들의 성분(성분이라는 기준은 그야말로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을 스물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통제했다.⁴² 북한에서 ‘복잡한 군중’과 ‘적대계급 잔여분자’는 기본적으로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며, 지속적인 검열과 검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었다. 이 과정에서 적발된 자들은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게 된다. 특히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북한의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특별 독재대상구역이 늘어났다고 한다.⁴³ 또한 ‘고난의 행군’ 기간에 “우리 내부에 숨어 있던 계급적 원수들은 복잡한 정세의 틈을 타서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였으며 우리 혁명 대오 안에서 판 꿈을 꾸던 자들이 더러운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⁴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는 그야말로 ‘호모 사케르’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⁵ 수용소의 존재와 그 양상에 대한 인지는 처벌의 공포를 통해 북한주민들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된다. 수용소의 삶을 이야기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아무런 법적 권리로 갖지 못하는 자들의 ‘벌거벗은 생명’의 본질을 유추할 수 있다.⁴⁶ 수감 기간은 무한정이고, 수감소 내의 접촉은 불가능하며, 수감소의 이탈은 죽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노동의 일상 속에서 인권은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삶이 바로 수용소다. 이들은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이며, ‘인민’의 권리도, ‘국민’의 권리도 박탈당해버린 존재이다.

이제 북한사회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주민들은 최고지도자와 공권력의 판단에 의해 ‘생사여탈권’이 좌우되며, 최고지도자의 ‘교시’와 국가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로동단련형’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라는 명분 때문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른 위기의식과 식량난에 의한 통제능력의 상실 속에서 최고지도자는 ‘예외상태’를 선포하고, 법률을 정지시키며 동시에 새로운 법률을 가동함으로써 국가 존속을 추구한다. 이 ‘예외상태’에서 북한주민들은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정치에 포박당하게 된 것이다.

⁴² 1993년 “주민등록사업참고서”라는 북한 문건이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부)출판사에서 발간되었으며, 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이다. 『월간조선』, 2007년 7월호 참조.

⁴³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8.

⁴⁴ 김정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사회과학원학보』, 제4호 (2002), p. 13.

⁴⁵ 현재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개천 14호, 요덕 15호, 명간 16호, 개천 18호, 회령 22호, 청진 25호 관리소가 있으며, 약 15만 4,000여명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pp. 17~20.

⁴⁶ 위의 책, pp. 38~62.

IV. ‘통치술’로서의 ‘국방위원장 체제’: 위기관리체제의 ‘일상화’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통치형태로 운영되었다. ‘고난의 행군’ 기간을 북한사회의 중대한 위기 국면으로 간주한다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통치형태의 변형은 일종의 ‘위기관리 체계’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북한은 이 시기에 ‘국방위원장 체제’를 선택했는지 추적하는 것은 북한 국가성격의 변화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1. ‘예외상태’의 잠정적 조치인 통치술의 일상화

현대의 전체주의는 ‘예외상태’를 통해 정치적 반대자뿐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치 체제에 통합시킬 수 없는 모든 범주의 시민들을 육체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합)법적 내전을 수립한 체제로 규정된다. 즉 ‘항구적인 비상상태의 자발적 창출’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는 ‘예외상태’가 일상화됨을 의미한다. 아감벤에 의하면 ‘예외상태’가 점점 더 현대정치 지배적 통치 패러다임이 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취해진 잠정적 조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⁴⁷ 특히 전체주의의 지배는 “자신이 제정한 실정법을 무시할 정도로 또는 폐지하든 하지 않던 상관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실정법을 무시”하며, “자연법칙이나 역사법칙을 엄격하고 확고하게 따른다”고 주장한다.⁴⁸ ‘고난의 행군’이라는 ‘예외상태’에서 실정법은 무의미했다. 이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북한은 항일혁명전통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며 새로운 운동을 발기한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행군’을 ‘사회주의 강행군’으로 돌파하는 것이며, 동시에 강행군의 방향은 ‘선군정치’를 통한 ‘강성대국’ 건설이다.

“예외상태가…상례가 된”⁴⁹ 순간부터 그것이 점점 더 예외적 조치 대신 통치술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구성하는 패러다임으로써의 본성을 드러낸다.⁵⁰ 이것은 ‘예외상태’가 예외가 아닌 일상화로 나타나면서 ‘예외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가 아니라 통치를 실행하기 위한 일상적 상황으로 돌변한다는 것이며, 이 일상적 ‘예외상태’를 통치의 환경으로 이용하면서 법질서를 새롭게 구성

⁴⁷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pp. 15~16.

⁴⁸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2』, p. 257.

⁴⁹ Walter Benjamin, Über den Begriff der Geschichte, *Gesammelte Schriften* (Frankfurt a.M.: Suhrkamp, 1972~1989), Vol. I. 2. p. 697;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p. 23에서 재인용.

⁵⁰ 조르조 아감벤, 『예외상태』, p. 23.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제 일시적 조치가 일상이 되는 통치술이 착수되는 것이다.

통치술이 행해야 하는 바는 “국가를 존재케 하는 임무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통치술은 “국가가 견고해지고 항구성을 가지며 부유해지고 또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직면해 강고해지도록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동시에 국가에 대한 무한정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내적관리라고 할 수 있다.⁵¹ 통치 또는 내적관리는 국가 내부의 ‘복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어떤 행위라고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통해 통치는 개인, 행위, 부, 자원, 재산, 권리 등과 같은 모든 사물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⁵² 따라서 통치술은 국가를 존재케 하고 부강케 하기 위한 무한정적인 규제를 시행하는 내적관리이며, 국가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과 사물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방식을 의미한다.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고난의 행군’은 최고 주권자인 ‘수령’, ‘주석’, ‘총비서’ 등으로 지칭되는 통치의 공백을 알리는 것이었다. ‘고난의 행군’의 원인이 무엇이었건 간에 그것은 북한사회에서 ‘예외상태’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예외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술이 필요하다. 즉 국가는 큰 힘을 갖는 반면 인민은 작은 권리를 갖게 되는 역설적 상황의 진입을 의미한다. 북한이 주장하듯, 정치적 지배에서 폭력기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폭력은 국가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며, “폭력이란 다름 아닌 무장한 사람들의 조직체, 다시 말하여 군대, 경찰, 헌병 등의 강화”를 의미한다.⁵³ 국가는 이 폭력기관을 통해 “반사회주의적 및 비사회주의적 요소와 현상에 대한 철저한 진압과 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원수들의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고 철옹성같이 옹호고수”해 나가는 것이 통치술의 핵심이 된다.⁵⁴

김정일은 1993년 4월 국방위원장에 취임했다. 당시 헌법에 의하면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은 국방위원장 겸 최고사령관으로 호명되었다.⁵⁵ 1998년 9월 5일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

⁵¹ 미셸 푸코 지음, 오토르망 율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2012), pp. 24~26.

⁵² 푸코는 복수의 이해관계를 “개인 혹은 집단에 속하는 각자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사회적 유용성과 경제적 이윤 사이에서, 시장의 균형과 공권력의 체제 사이에서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서술한다. 위의 책, p. 78.

⁵³ 류경만, “국가기구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합보: 력사 법학』, 제49권 제1호 (2003), p. 51.

⁵⁴ 황금철, “사회주의준법성의 본질과 그 강화의 필요성,” 『김일성종합대학합보: 력사 법학』, 제44권 제4호 (1998), pp. 45~46.

⁵⁵ 『연합뉴스』, 1995년 10월 9일.

방위원장을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기관으로 격상시켰고 그와 동시에 김정일을 재추대했다. 따라서 북한은 국방위원장이 실질적인 국가수반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후적 결정이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직후 김정일은 이미 “우리나라 헌법에서 주석제를 없애고 이에 맞게 국가주권기관 체계를 고치자”며, “앞으로 열릴 최고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여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립법적 조치”를 취하자고 제기했다.⁵⁶

2. 위기극복의 새로운 통치술로서의 ‘국방위원장 체제’

‘국방위원장’ 김정일은 북한사회의 정치적 방향을 ‘선군정치’로 규정하고 국가의 군사화를 강화했다. 이러한 징후는 이미 1994년부터 시작되었다. 김정일은 당을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임명하여 주신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인민군대를 강화하는 사업을 가장 중요한 혁명임무”라고 규정했다.⁵⁷ 즉 김정일은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과 최고사령관으로서 북한을 통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9년 개정 헌법 제102조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규정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일은 내치문제보다는 당과 군사부문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나에게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국가행정경제사업실무에 맡겨지지 말고 당과 인민군대를 강화”하라는 것이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언급한다. 이런 유훈에 따라 김정일은 “여러 가지 립법적, 행정경제적 실무에 맡겨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당사업과 군대사업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다”면서, 자신의 중요임무를 당과 군사부문으로 명확히 규정했다.⁵⁸

북한은 ‘선군정치’의 출발을 1995년이라고 설명한다.⁵⁹ 그리고 국방위원장 중심

⁵⁶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7월 11, 19일),” pp. 3~5.

⁵⁷ 단, 김정일은 “우리 당은 혁명을 령도하는 최고정치조직”이며, “당을 강화하고 당의 령도적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인민대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 세워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라고 규정했다. 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 p. 4.

⁵⁸ 위의 글, pp. 4~5.

⁵⁹ “1995년 1월 1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락술 초소를 찾으신 날은 이 땅우에 선군정치의 첫 포성이 울린 역사의 날,” 『로동신문』, 2000년 11월 18일;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p. 23에서 재인용. 또한 1995년부터 ‘고난의 행군’ 종료를 선언한 2001년까지 김정일의 행보를 ‘선군행보’라고 주장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지

의 ‘선군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책동이 전례없이 강화되었을 때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목숨으로 보위할데 대한 구호를 먼저 들고 실천에 옮긴 것도 인민군대이며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결사관철하는 기풍을 발휘한 것도 인민군대이며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하겠다는 구호를 들고 인민경제의 주요전선에서 돌파구를 열고 로력적 위훈을 떨친 것도 다름 아닌 인민군대”였다는 ‘고난의 행군’ 시기 인민군대의 활동을 제기한다. 또한 인민군대가 “사회주의 사회의 여러 집단들 가운데서 혁명성, 규율성, 조직성이 제일 강한 집단”이었다고 주장한다.⁶⁰

핵심은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통치 실행에 있어서의 규율과 조직성에 맞춰지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충실성이다. 김정일은 “인민군대간부들은 나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며 내가 명령만 내리면 결사전을 벌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나는 군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라며 인민군대에 대한 신뢰를 공개적으로 드러냈다.⁶¹ 당시 조선노동당의 국가 통제력은 극도로 이완되어 있었다. “인민군대의 당 정치사업은 잘되고 있지만 사회의 당 사업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고,⁶² 당이 이대로 간다면 ‘노인당’, ‘송장당’이 될 수 있다는 김정일의 발언을 통해 더욱 확실히 알 수 있다.⁶³

북한은 1990년대 ‘예외상태’에서 국가 내부의 ‘국방위원장-혁명그룹-군부’ 간의 ‘복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새로운 통치술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것은 ①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으로서의 김정일의 권력구조 구축, ② 당 중심이 아닌 군부 중심으로서의 ‘선군정치’ 제시, ③ 대중적 비전으로서 북한판 발전전략인 ‘강성대국’을 내세운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국방위원회 구조이다. 국방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권한과 조직을 확대하였고, 총정치부,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

도는 주체 84(1995)년부터 주체 90(2001)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814개 단위에 이르고 있으며 그 로정은 무려 수십만리를 헤아린다.” 김문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펼쳐진 주체적 혁명무력건설의 최전성기,” 『사회과학원보』, 제2권 (2002), p. 52.

⁶⁰ 리홍수, “군대는 혁명력량편성에서 기본,”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제49권 제2호 (2003), pp. 17~18.

⁶¹ 김정일,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년 12월 31일),” 『김정일선집』, 제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⁶² 김정일, “올해에 당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7년 1월 1일),” 『김정일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p. 255.

⁶³ 『일간조선』, 1997년 4월호.

위부, 인민보안부 등의 군사 및 공안조직, 제2경제위원회와 기계공업부 등의 군수 계통으로 구성되었다(200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 기준). 따라서 국방위원회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와의 연계를 두되 치안 및 공안조직을 통한 내치에 집중하면서, 군수계통을 통해 통치자금의 확보 및 ‘선군정치’의 경제적 뒷받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중앙군사위원회가 ‘전쟁과 평화문제, 일체 무력에 적용되는 전시대비 등 중요 국방관련 결정문제’만을 다루고,⁶⁴ 내치에 해당되는 모든 권한을 국방위원장의 지도하에 국방위원회가 관할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방위원장 체제’는 국가 내부의 관리와 통제를 주요 목표로 한 통치술이며, 그 이외의 부분은 방치하거나 ‘자립화’를 강제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의도는 사후 추인 방식으로 2009년 개정 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즉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영도자(제100조)’이며 동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제102조)’으로, 그 임무와 권한을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제103조)로 규정했다.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 1994년 이후 김정일은 북한사회를 국방위원장 및 최고사령관으로 통치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김정일은 국방위원회를 통해 독립적이며 위계적인 통치 구조를 구축함과 동시에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군과 공권력을 중심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원회가 “어느 한 기관에 종속되어 있거나 다른 국가기관들과 동등한 지위를 차지한다면 고도의 조직성과 규률성, 신속성을 요구하는 국방사업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할 수 없음”으로, 국방위원회를 가장 상위의 기관으로 격상시킨 것이다.⁶⁵

‘주석제’를 폐지하고 ‘국방위원장 체제’를 통해 북한을 통치한 것은 1990년대 ‘예외상태’에서 김일성의 카리스마와 유훈을 유지함으로써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이례적 조치임과 동시에 1992년 헌법 개정 내용의 활용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1992년 이전까지 북한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는 주석이었다. 그러다 1992년 개정헌법에서 국방위원장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북한에서 ‘명령’은 ‘주석’과 ‘국방위원장’만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⁶⁶ ‘명령’은 국방위원회에 의해 채택 공포되는 법 문건이며, “국가적으로 가장 절실하고도 긴급히 해결

⁶⁴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2호 (2008), p. 48.

⁶⁵ 허성근, “공화국 국방위원회에 대한 헌법적 규제는 당의 선군정치 실현의 확고한 담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제49권 제4호 (2003), p. 41.

⁶⁶ 단, 1998년 개정헌법 제104조에는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로 되어 있다가, 2009년 개정헌법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명령을 낸다”로 수정되었다. 이와 같은 변동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여야 할 문제들이 명령으로 하달”된다. 특히 핵심적으로 ‘명령’은 “전국가적 범위이고, 시공간상 효력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으며”, “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이 선포되며 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이 조직되고 중요 군사간부들이 임명 또는 해임”되며, “국가의 전반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이 지도”된다.⁶⁷ 이를 통해 볼 때, ‘명령’은 헌법에 근간하지만, 헌법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즉 ‘명령’은 전권의 보장을 의미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1994년부터 2011년까지의 ‘김정일 시대’의 통치는 2009년 개정 헌법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김정일은 ‘북한의 최고영도자’이며,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다. 김정일은 국가의 전반적 사업 및 국방위원회 사업을 지도하고,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조약의 비준·폐기 및 특사권을 행사하고, 비상사태와 전시상태 및 동원령을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국방위원회는 ‘선군혁명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국가의 중요정책을 수립’하고, ‘국가의 전반적 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했다. ‘수령’ 사망과 식량난이라는 긴급사태에 직면하여, 이 사태를 ‘고난의 행군’으로 규정하고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선군정치’ 노선을 천명한 것은 김정일이었다. 북한의 주권자인 김정일이 ‘예외상태’를 선포하고, 그 상태를 통치하는 지위로서 ‘국방위원장 체제’를 구축했다. 일시적 긴급사태 극복을 위한 조치가 일상적 통치술로 전환된 것이다. 이러한 이례적 체제는 변경되지 않고 그의 사망 시점까지 유지되었다.

V. 결론: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가성격

“국가제도는 경제적 토대에 의해 단순히 인과적·목적론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규정된 형성물이 아니라, 험난한 투쟁과 간주체적(間主體的) 소통의 복합적 중첩과 교차의 산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이 복합적인 움직임을 배경으로 국가의 역사적 형태는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다.”⁶⁸ 즉 북한은 사회주의 당-국가 시스템과 계획경제라는 고전적 토대 위에서 출발했지만, 북한의 역사 속에서 벌어진 험난한 투쟁을 통한 권력구조의 변화, 간주체적 소통을 통한 동의와 변형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중첩되고 교차되면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김정일 시대’의 국가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의 기간 동안

⁶⁷ 리명일, “행정법의 특징과 원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역사 법학』, 제49권 제1호 (2003), p. 53.

⁶⁸ 황태연, 『지배와 이상: 정치경제, 자연환경, 진보사상의 재구성』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p. 35.

북한의 국가성격이 어떻게 구성·변용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북한에서 ‘김정일 시대’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최초의 권력교체가 이뤄진 시기였다. 북한 ‘붕괴론’부터 ‘급변사태’ 그리고 ‘군부에 의한 쿠데타’ 설 등 ‘김정일 체제’의 위협성에 대한 논의들이 무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은 자신이 사망한 시점까지 최고지도자의 위치를 유지하며 북한을 통치했다. 특히 ‘김정일 시대’는 갑작스러운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식량난 속에 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치력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이 긴급사태에서 김정일은 최고지도자로서 ‘고난의 행군’으로 명명되는 ‘예외상태’를 선포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통치술로 대응했다.

주권자가 선언한 ‘예외상태’에서 북한주민은 ‘벌거벗은 생명’이 되어, 법속에 포박되었지만 동시에 법으로부터 내버려지는 존재가 되었으며, 주권자는 법의 내부와 바깥 모두에 위치하며 법을 정지시키면서 새로운 규범을 구성했다. 그렇게 구성된 ‘국방위원장 체제’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라 ‘김정일 시대’ 전체를 관통하는 항구적인 통치술이 되었다. ‘예외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일시적 조치로서의 주권자에 대한 전권의 보장은 북한주민의 권한은 더욱 축소시키고 주권자의 권한은 더욱 강화시키는 구조가 되었다. ‘주석’이 아닌 ‘국방위원장’이라는 기형적 제도에 불구하고, ‘국방위원장’은 ‘주석’의 권한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즉, ‘고난의 행군’ 시기가 ‘예외상태’로 선언되었으나 최고지도자의 권한은 변함없이 유지되었고, 역으로 당대를 살아가는 ‘인민’들은 주권자에 의해 ‘생사여탈권’이 결정되었다. 이 기형적 구조를 지탱한 것은 국방위원장을 필두로 하는 국방위원회였다. 국방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예외상태’ 속에서 통치를 실행하는, 즉 내치와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제 김정일 사망 이후 새롭게 ‘김정은 체제’가 들어섰다. ‘김정은 시대’는 전통적인 당-국가시스템의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정은이 김정일과 같이 김정일을 ‘총비서’와 ‘국방위원장’으로 남겨두고 자신은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통치하는 것, 또한 내치 중심의 치안기구를 강화하는 방향을 볼 때, 그것이 당-국가시스템의 복원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여전히 북한은 ‘예외상태’의 일상화 속에 있으며, 위기극복의 통치술이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여전히 ‘벌거벗은 생명’으로서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생명으로 결박되어 있다.

■ 접수: 10월 30일 ■ 심사: 11월 06일 ■ 채택: 11월 25일

참고문헌

1. 단행본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서울: 창비, 2003.
- 마르셀 모스 지음. 이상률 옮김. 『증여론』. 서울: 한길사, 2002.
- 미셸 푸코 지음. 이균현 옮김. 『성의 역사: 얌의 의지』. 서울: 나남출판, 1994.
- 미셸 푸코 지음. 오트르망 옮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서울: 난장, 2012.
- 스즈키 마사유키 지음. 유영구 옮김. 『김정일과 수령제 사회주의』. 서울: 중앙일보사, 1994.
- 와다 하루키 지음. 서동만·남기정 옮김. 『북조선: 유격대국가에서 정규군국가로』. 서울: 돌베개, 2002.
- 이금순 외. 『북한 정치범수용소』.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제임스 C. 스콧 지음. 전상인 옮김. 『국가처럼 보기: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2010.
-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주권 권력과 별거벗은 생명』. 서울: 새물결, 2008.
- 조르조 아감벤 지음. 김항 옮김.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09.
- 좋은벗들. 『북한식량난』. 서울: 불교정토회, 1998.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정일준 옮김. 『쓰레기가 되는 삶들: 모더니티와 그 추방자들』. 서울: 새물결, 2008.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함구진 옮김. 『유동하는 공포』. 서울: 산책자, 2009.
- 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2』. 서울: 한길사, 2006.
- 황태연. 『지배와 이성: 정치경제, 자연환경, 진보사상의 재구성』.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6.
- _____. 『계몽의 기획: 근대정치사상 연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04.
- Benjamin, Walter. Über den Begriff der Geschichte. *Gesammelte Schriften*. Frankfurt a.M.: Suhrkamp. 1972~1989. Vol. I. 2.
- Bodin, Jean. On Sovereignty. *For chapt. from The Six Books of the Commonwealth*.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Cummings, Bruce. "The Corporate State in North Korea." Koo Ha-gen (ed.). *State and Society in Contemporary Korea*. New York: the Cornell University, 1993.
- Kornai, Já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Princeton: th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 Schmitt, Carl. *Politische Theologie*. München, 1922.

2. 논문

- 강진웅. “북한의 국가권력에 대한 미시적 접근: 호전적 민족주의와 주민들의 삶.” 『한국사 회학』. 제44집 2호, 2010.
- 고재홍. “북한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역할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제12권 제2호, 2008.
- 고지현. “조르제 아감벤의 ‘호모 사케르’ 읽기.” 『人文科學』. 제93집, 2011.
- 김갑식. “1990년대 ‘고난의 행군’과 선군정치: 북한의 인식과 대응.” 『현대북한연구』. 제8권 1호, 2005.
- 김종욱. “북한의 관료체제 ‘변형’과 ‘일상의 정치’.” 『현대북한연구』. 제10권 2호, 2007.
- 김천구. “2012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현안과 과제』. 제13호 29권 (현대경제연구원), 2013.
- 문경연·김판석. “북한 경제난의 인구학적 영향과 경제에의 함의.”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 박경숙. “북한의 식량난 및 기근과 인구변동.”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 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 오일환. “김정일 시대의 북한체제의 현황.” 오일환 외. 『현대북한체제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윤철기. “북한체제의 주변부로의 귀환: 김정일시대 ‘정치적 렌트수취국가’로의 이행과 ‘과도기 사회’적 특성.” 『한국정치학회보』. 제47집 제1호, 2013.
- 이 석. “1994~2000년 북한기근: 초과사망자 규모와 지역별 인구변화.” 『국가전략』. 제10권 1호 (2004).
- 표광민. “주권해체를 향한 아감벤의 예외상태론.” 『사회과학연구』. 제37권 1호, 2011.
- Goodkind, Daniel and West Lorraine. “The North Korean Famine and Its Demographic Impac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 27. No. 2, 2001.
- Milliken, Jennifer and Keith Krause. “State Failure, State Collapse, and State Reconstruction: Concepts, Lessons, and Strategies.” *Development and Change*. Vol. 33, No. 5, 2002.
- MacKay, Joseph. “State Failure, Actor-Network Theory, and the Theorisation of Sovereignty.” *BSIS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 2006.

3. 북한 원문

- 김문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펼쳐진 주체적 혁명무력건설의 최전성기.” 『사회과학원보』. 제2권, 2002.
- 김정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사회과학원학보』. 제4호, 2002.
-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김정일선집』. 제1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Abstract

Perpetuating ‘State of Exception’ and ‘System of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s Ruling Crafts: *Focusing Characteristics of State of North Korea in ‘Kim Jong Il Era’*

Jong-Wook Kim

This article is defined as follows about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 in ‘Kim Jong-il era.’ North Korea of ‘Kim Jong-il era’ is perpetuating ‘state of exception,’ and ruling crafts to overcome the ‘state of exception’ has emerged ‘System of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That’s why to overcome three kinds of crises faced the North Korea. The three crises is the occurrence of cracks in the ‘suryung’ authorities, national authorities, and bureaucratic system. In this crisis, the state has given up caring about the people. Instead, the supreme leader of North Korea was declared the ‘state of exception’ in order to maintain government. That is ‘Arduous March.’ This is operate ruling crafts of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as system to overcome crisis. People in North Korea by the this ruling crafts was reborn as the ‘Homo Sacer’ and ‘state of exception’ was perpetuating. The measures to cope temporary emergency is switched with the everyday ruling crafts. That was the principle of ‘Kim Jong-il era’ national operations.

Key Words: State of Exception, 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Ruling Crafts, Homo Sacer, Characteristics of State